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20가단51875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

담당변호사 오종윤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민

담당변호사 박종수

변 론 종 결 2021. 4. 22.

판 결 선 고 2021. 5. 27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20. 5. 7.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4,040,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,040,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주식회사 C(이하, 'C'라 한다)에 대한 채권

(1) 원고는 2002. 9.경부터 C에게 인쇄용지를 공급하였는데 2020. 5. 7.경 기준으로 11,861,179원의 물품대금 미수금이 남아 있었고, 물품대금 결제조로 교부받은 C 발행의 약속어음 4매(액면합계 금 61,582,549원)는 2020. 5. 18. 모두 부도처리가 되었다.

(2)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미수금과 어음금 합계 73,443,728원(=11,861,179원 + 61,582,549원)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9435)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. 7. 22. “C는 원고에게 73,443,728원 및 이에 대한 2020. 7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”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채권양도 등

(1) 피고는 2014년경부터 C에게 지류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C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C가 2020. 4. 29.까지 발행하였으나 결제하지 못한 약속어음 4매의 액면 합계금이 693,310,710원이다.

(2) C는 2020. 5. 7. 피고에 대한 위 어음금 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(이하, '이 사건 채권양도'라 한다), 2020. 7. 22. 양수인

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4,040,240원을 수령하였다.

다. C의 채무초과

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위 임대차보증금(공제 전에는 5,000만 원이었다), 주식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 32,603,295원, E(F 대표)에 대한 물품대금 18,037,080원, G에 대한 물품대금 61,683,241원, 합계 163,323,616원(=50,000,000원 + 32,603,295원 + 18,037,080원 + 61,683,241원)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766,754,438원(= 원고의 위 물품대금 등 73,443,728원 + 피고의 위 어음금 693,310,710원)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1, 2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등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등

(1)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,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

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는바,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의

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행위는, 위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(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7다2718 판결, 2011. 3. 10.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).

(2)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와 같이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이에 관하여 채무자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① 피고가 위 어음금 지급을 독촉하자 C의 대표이사가 연락이 두절된 점, ② C는 대금지급이나 어음교부 등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여러 채권의 양도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, ③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은 C의 본점

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서 C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 범위
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,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(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), 또한,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

있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3468, 23475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. 7. 22.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양도채권이 소멸되었음이 앞서 본 바이므로, 원고는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등 채권액의 범위 내인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.

마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,040,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{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

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,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}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영수

별지

채무자회사인 (주)C(서울 중구 H ; 대표자 I)가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의 J, K, L,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50,000,000원

계약일자	임대인	임대차 목적물
2017. 4. 4.	J, K L, M	서울 중구 충무로 N [도로명 주소] 서울 중구 O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1층 108.61㎡ 지층 106.31㎡

※ 임대인들의 주소

○ J/K

경기 남양주시 P아파트 Q호

○ L/M

서울 광진구 R아파트 S호-(끝)

